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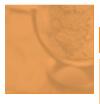
# 미국의 점자법 검토와 시사점

■ 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I. 들어가며

지난 1월 4일은 세계 점자의 날이었다. 점자를 창안한 Louis Braille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생 일을 세계 점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Louis Braille은 3세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 이 되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는 15세 때 종이에 도드라진 점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방식의 문자체계를 개발하였다. 도드라진 점들은 손끝 의 촉감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것이 지금껏 우리에게 알려진 點字의 기원이다. Louis Braille의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이 방식은 시각장애인들이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점자가 갖는 유용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점자가 학교교육에서 채택된 것은 Louis Braille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나서였다. 처음 교육현장에서 실시된 이후 점자교육은 프랑스 전역에 보급되었지만, 다른 국가로 점자교육이 확대되기까지에는 역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건에 대한 정보, 재정에 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이 시각 인쇄물 이외에 점자의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시각장애인들



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컴퓨터 사용에서 소외된 계층이 상존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니터상의 정보를 편의상 출력해 쓰듯이, 시각장애인 역시 편의상 점자형식의 하드카피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자의 교육과 보급은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세계 점자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 듯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또한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각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점자관련 법안의 정비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점자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미국 점자법의 입법 배경<sup>1)</sup>

미국에서 점자법이 입법된 배경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함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점자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를 불식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대 미국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단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각장애전문가들로부터의 반응은 우려와 반감이었다. 이러한 갈등에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과연 누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간단하지만, 단순치 않은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진정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집단이 바로 시각장애전문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은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50여 년 동안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시각장애인의 단체결성의 문제, 시각장애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 선택의

1) Fredric K. Schroeder, "Braille Bills: What are they and what do they mean?",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1995 ([www.blind.net/alternative-techniques/braille/braille-bills-what-are-they-and-what-do-they-mean.html](http://www.blind.net/alternative-techniques/braille/braille-bills-what-are-they-and-what-do-they-mean.html)).

문제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둘러싼 논쟁에는 시각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제가 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필요한 요구를 판단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권자는 바로 시각장애인 자신 스스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유소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사용 교육 문제가 불거졌다. 흰지팡이 사용 교육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시각장애전문가들은 흰지팡이 사용 교육이 최소한 고등학교 연령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유소년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쥐어주면서 길가로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성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권 확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 분명하고도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유소년 시각장애인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되었고, 시각장애전문가들도 흰지팡이 사용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조기 흰지팡이 사용 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유소년 시각장애인들도 흰지팡이를 사용해서 독립적인 이동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이 공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시각장애전문가들의 주장이 그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졌던 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점자교육에 관한 논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었다. 1980년대 초반 시각장애학생들의 문맹률 증가가 문제되었고, 문맹률 증가의 원인으로는 1970년대 잔존시력 활용정책이 지목되었다. 잔존시력 활용정책은 불완전한 시각능력이 완전한 시각능력 상실보다는 다행스러운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잔존시력 활용정책에 따라 시각장애학생들은 점자를 배우는 대신 제한된 시각능력에 의존해서 활자 인쇄물을 읽는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자교육의 부재는 시각장애인들의 문맹률 증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균등한 기회의 봉쇄라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자교육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점자법의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점자교육은 시각장애인의 문맹을 탈피해서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었고, 점자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이루어 1987년 미네소타 주에서 처음으로 점자법안이 통과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노력들과 마찬가지로 점자법 역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의 투쟁이었다. 최초의 점자법안이 통과된 이후, 애리조나 주, 캔자스 주, 켄터키 주, 루이지애나 주, 메인 주, 메릴랜드 주, 미시건 주, 미주리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텍사스 주, 버지니아 주



등의 여러 주가 시각장애학생들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대열에 합류하였다.

### III. 미국 점자법의 실례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점자교육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sup>2)</sup> 그에 의하면 개별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 IEP) 팀이 시각장애아동의 읽기 및 쓰기능력, 필요성, 적절한 읽기 및 쓰기매체 등을 평가한 후(아동의 점자교육이나 점사사용에 대한 향후 필요성을 포함한다), 점자교육 및 점사사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아동에게 점자교육 및 점사사용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점을 중심으로 미국 각 주의 점자법 입법을 위한 표준안과 매사추세츠 주의 점자법을 살펴보고, 각 주 점자법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 1. 점자법 표준안<sup>3)</sup>

이 법안의 명칭은 시각장애인의 읽기 권리 및 교육에 관한 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안은 시각장애아동의 개별화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요구에 적합한 점자의 지도와 점자의 사용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점자의 재생산이 가능한 컴퓨터 접근 양식의 자료를 제공하며, 표준 점자교육에 부합하는 점자교육 교사의 인증과 재인증을 요구한다.

##### 1) 개별 교육 프로그램

시각장애아동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개별교육 프로그램 팀에서 아동의 읽기와 쓰기능력의 필요성 및 적절한 읽기와 쓰기매체 등을 평가한 후(향후 아동의 점자교육이나 점사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한다), 점자교육 및 점사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점자교육 및 점사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 절의 어떤 조항도 다른 특별교육 서비스가 아동의 교육 필요성에 적절한 이상 점자의 배타적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관련 서비

2) IDEA(reauthorization of 2004), Section 614 (d)(3)(B)(iii).

3) Braille Literacy Services for Blind or Visually Impaired Children: State Model Bill.

스 조항은 점자사용이나 점자교육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 2) 표준 능숙도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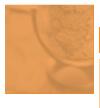
점자 읽기 및 쓰기교육은 시각장애인아동이 또래 아동과 유사한 능력, 학년 정도의 예상 능숙도 수준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개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 (a) section2에서 요구되는 평가를 통해 획득된 결과
- (b) 점자가 다른 수업활동과의 통합을 통하여 주된 학습학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
- (c) 점자교육이 시작되는 시기
- (d) 교육과정 시간, 각 교육단계의 빈도 및 지속기간
- (e)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달성된 점자 읽기 및 쓰기 능숙도, 객관적 평가수단
- (f) 점자교육이나 점자사용이 아동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 (1) 점자교육 및 점자사용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문헌의 검토 후 도달한 결론이라는 보고
  - (2) 특수교육 없이도 아동의 효과적인 읽기 및 쓰기능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정에 사용된 특정 근거

## 3) 교육 자료

각 주나 교육지구기관(중등과정후 기관 포함)에 판매되는 모든 교과서(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제작자는 전자형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 i ) 점자나 합성음성 전환에 적합하도록 인코딩되고, (ii) 정보의 구조적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점자전환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마크업 언어가 사용된 콘텐츠이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교육인증 교사는 인증과 갱신 과정의 일부로서 능숙한 점자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위 교사의 인증을 담당하는 각 주 당국은 시각 및 신체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 서비스, 의회도서관, 워싱턴 D.C.에서 채택된 기준에 근거하여 점자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교사의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맞·춤·형·법·제·정·보

### 4) 정의

이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시각장애인’은 특수교육 서비스에 적합한 다음의 자를 말한다<sup>4)</sup>:
  - (1) 20/200미만의 교정시력 또는 장지름 20도 이하의 각거리 제한 시야를 갖는 자
  - (2) 의학적으로 시각능력 퇴행이 예상되는 자
- (b) ‘점자’는 표준영어점자로 알려진 촉각을 통한 읽기 및 쓰기체계를 말한다.
- (c) ‘개별교육 프로그램’과 ‘개별교육 프로그램 팀’의 정의는 장애인교육법(20 U.S.C. Section 1414(d))의 section 614(d)에 제시된 바와 같다.
- (d) 교과서 및 기타 교육자료는 교육과정 사용을 위한 모든 인문·비인문 자료를 말한다.

## 2. 매사추세츠 주 점자법<sup>5)</sup>

시각장애인을 위한 매사추세츠 주 위원회는 등록자에게 점자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Section 1). 최소한 점자능력 2등급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와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직업 재활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신청인 표준 평가 안에 점자교육의 적정성에 관한 서면 사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의 사정은 (i) 유사 지능수준과 비교한 인쇄물의 읽기 및 쓰기 효율성, (ii) 인쇄물의 사용에 따른 피로도, (iii) 향후 예측되는 추가적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점자능력 2등급’은 단어의 단수 및 축약이나 규칙적 사용 어근의 점자자료 생성에 관한 의회도서관 채택 점자체계를 의미한다.

이사회는 점자교과서의 타이틀과 소스에 관한 정보 및 현재 가능하지 않은 타이틀의 점자번역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Section 2). 이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매사추세츠 주 위원회 전문가나 위반 사항의 조사담당자의 검사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학교들이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면 자료들이 시각장애인의 개별교육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또

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4.22.)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에 따른 시각장애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5) Massachusetts Braille Bill, Signed into Law August 1996, Senate No. 2409,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Senate, July 29, 1996.

는 적응방식을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점자교육의 능숙도는 시각장애학생 지도교사의 최초 인증요건이어야 한다(Section 3). 위 능숙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회도서관 기준을 충족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증한다.

시각장애아동 기준에 따라 판명된 경우 아동의 점자교육 적절성에 대한 사정을 포함해야 한다(Section 4). 위 사정에는 (i) 특수교육이 필요치 않은 아동과 비교한 읽기 및 쓰기 효율성, (ii) 인쇄물의 사용에 따른 피로도, (iii) 아동의 예측되는 추가적 시력상실, (iv) 시각장애아동 지도교사에 의해 수행된 아동의 현재 점자능력 및 교육 필요성 여부에 대한 상세 진단을 포함해야 한다. 위 교육이 아동의 특수요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아동의 특수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빈도와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점자교육은 학생의 교육요구에 적절한 다른 특수 교육 서비스와 조합되어 시행될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 지도교사로 인증된 자는 인증 개신 요건에 따라 점자교육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한다(Section 5).

교육당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원회 및 점자식자에 관한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요구되는 점자능력 최초평가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 법의 효력발생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Section 6).

점자식자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Section 7). 자문위원 중 1인은 점자생성에 관한 컴퓨터 기술 전문가로, 2인은 시각장애아동 교육자로, 2인은 시각장애아동 학부모로, 2인은 점자를 일상적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으로, 2인은 시각장애 자문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법의 효력발생 후 120일 이내에 지명되어야 하고, 교육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할 때 해산된다. 위원은 무보수로 봉직하되, 업무수행을 위한 실경비를 지급받는다.

주 당국에서 비용에 대한 재원을 책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시티나 타운도 주 회계감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부담하지 않는 지출의무나 추가지출을 부과시키는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준수 할 필요가 없다. 단, 시티나 타운은 재량에 따라 그러한 조항을 준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맞·춤·형·법·제·정·보

### 3. 기타 미국 각 주 점자법 비교<sup>6)</sup>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은 교과서 내용을 점자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자에게 전자파일포맷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의 비교표는 각 주의 점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과서 형식 및 교육자료, 요구되는 전자파일포맷 등을 비교한 것이다.

주	법규	요구자료	포맷 / 특별지시	제출기한
앨라배마	Admin. Rules Sec. 290-080-090-.13 (25)	모든 챕택 교과서 및 보충자료, 인문 및 비인문	ASCII나 점자버전과 호환가능한 다른 전자포맷	비특정
알칸사스	Statute Sec. 6-41-405/ Contract	모든 챕택 교과서 인문과목; 비문자 교과서 부분은 기술 가능시	Per state contract, ASCII, ICADD -22, SGML 이상	Per contract, 요청후 90일
애리조나	Statute Sec. 15-214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기술가능시	점자버전과 호환가능한 교육부 승인 표준포맷	비특정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60061	다른 주에 제공되는 모든 인쇄자료 / 권장과목: 영어, 예능, 역사, 사회, 언어, 수학, 과학, 보건	특정 코드 없음 / ICADD나 SGML 같은 점자호환포맷 권장	책택후 1개월
코네티컷	Statute Sec. 10-295	점자 및 큰활자조판을 포함한 특수교육자료를 위한 기금 조성		
플로리다	Statute Sec. 233.0561(5)	인문과목 챕택 교과서; 비인문은 기술가능시 (수정·교정사항 포함; 교정표 제공가능)	Per instructions: DOS용 ICADD 22나 SGML, 3.5" double-sided/high density diskette; Labeling: Seq #, ISBN, bk title, file name, pub, typstng co/contract, format option/version, copyright date; Contents: 표제, 감수, 목차, 본문전체, 부록전체, 용어, 색인(텍스트파일의 특별항목 포함)	요청시

6)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Revised 9/1/2005.

조지아	House Bill 228 Signed by Governor – Act 321	모든 권장교과서는 전자포맷으로 제공될 것	.	.
하와이	Statute Sec. 302A-442.5	주나 교육기관에 판매되는 모든 인문교과서나 교육자료 / 비인문자료는 소프트웨어 가능시	인문 경우 ASCII, 비인문(자연 과학, 컴퓨터과학, 수학 및 음악) 경우 소프트웨어 가능시 / 하와이 고유어 자료는 예외	비특정
일리노이	Act 87-1071 Sec. 28-21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기술가능시	ASCII 파일 및 교과서 프린트카피	프린트카피는 요청시 15일 이내; 전자 파일은 90일 이내
인디애나	Statute Sec. 20-10.1-0-15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기술가능시	위원회가 결정하는 ASCII나 다른 포맷	요청시 60일 이내
아이오와	Statute Sec. 301.10	교육부가 요구하는 모든 교과서	전자 접자번역의 최신포맷	비특정
미시건	MCL 380.1704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접자 호환버전으로 직접 변환 가능한 기술가능시	출판사는 인쇄나 전자미디어버전을 초과하는 가격을 전자버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음	요청시
미시시피	Statute Sec. 37-23-199	인문과목; 기술가능시 비인문과목	ASCII 접근성	요청시 10일 이내
몬태나	HB 438 Chapter 490	교육지구는 장애인교육법(20 U.S.C. 1400 이하)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채택 교과서 자료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공할 것		
노스 캐롤라이나	Statute Sec. 115C-90	출판사에 대한 요구 없음	주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접자, 큰활자조판, 오디오 제작 계약 가능	
사우스 캘러이나	Contract	신규 제출 인문프로그램; 비인문은 기술가능시	접자전환 적합 전자포맷	서면요청시
오리건	Statute Sec. 343.595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전환 소프트웨어 가능시	접자버전 생성 포맷	교육지구 요청시



## 맞·춤·형·법·제·정·보

텍사스	Statute Sec. 31.028	주 교육위원회 요청에 따른 영어 및 스페인어 인문자료; 비인문자료는 기술가능시 / 보조 · 보충 자료 예외	Per instructions: ASCII, Windows · DOS용 ICADD 22 · SGML 또는 승인 포맷, 3.5" DDHD diskette이나 5.25" Syquest 또는 승인 미디어 / Labeling: Seq #, bk title, file name, pub, typstng co/Contents: 표제, 감수, 목차, 본문, 부록, 용어, 색인 (텍스트파일의 특별항목 포함)	
유타	Statute Sec. 53A-26-111	인문자료; 비인문자료는 기술가능시	ASCII	요청시
버지니아	Code Sec. 22.1-241	주 검정 및 계약 초등 기초 인문과목 교과서	ASCII 또는 상호협정 과목	서면요청시 90일 이내
웨스트 버지니아	Statute Sec. 8-10J-5	인문과목; 비인문과목은 기술가능시	ASCII	비특정

## IV. 미국 점자법의 시사점

미국에서는 점자법의 입법 및 개정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일생동안 읽기 및 쓰기능력을 갖추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자교육을 확대하여 왔다. 이는 점자가 시각장애학생의 읽기 및 쓰기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일반학생들을 위한 시각 인쇄물에 대응하는 매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교육이 부적합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읽기 및 쓰기교육으로써 점자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점자교과서 및 디지털자료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형식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에게 효과적인 점자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학생의 읽기 및 쓰기능력, 읽기 및 쓰기요구, 점자교육 및 점자사용의 향후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선천적 안구질환이나 안구이상의 경우 시력상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점자교육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큰활자조판이나 시력보조 특수안경 등의 도움으로 시각적 자료에 대한 당장의 접근이 가능한 학생들에게도 향후의 시각능력 감소예후를 고려하여 점자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점자교육의 의무적 실시여부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은 개정을 통하여 개별교육 프로그램 팀에서 실시하는 시각장애아동에 대한 점자교육 적정성 평가 이전에도 점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전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교육 프로그램 팀이 점자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재량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시각능력이 손상된 아동에게 점자교육이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교육현장에서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에게 읽기 및 쓰기교육이 보편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점자를 통한 읽기 및 쓰기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점자교육의 확대에 따라 시각장애학생 지도교사의 자격요건으로 점자능력이 요구되었고, 국가 인증 점자능력(National Certification in Literary Braille: NCLB)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sup>7)</sup> 시각장애 학생 지도교사가 점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각장애학생 지도교사에게 점자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사들이 충분한 점자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점자교육이 부실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각장애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점자법의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교사의 점자능력과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거나 교사에게 점자능력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점자법의 입법에서는 교과서 제작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순히 종이에 도드라진 점자를 새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를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91년 텍사스 주 점자법에서는 최초로 교과서 제작자에게 점자로 변환 가능한 포맷의 전자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법조항에 대해서 교과서 제작자들의 반발 역시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점자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호환가능 텍스트의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이 있으며, 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점자법은 점자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점자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이 점자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점자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의 정보접

7) NCLB는 점자교육에 대한 통일된 국가표준을 위해서 입안된 제도이다. 국립 시각장애전문 인증위원회(National Blindness Professional Certification Board:NBPCB)에서 주관하며, 5년 간으로 이루어진다.



## 맞·춤·형·법·제·정·보

근성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단체와 관련 금융·신용기관의 협상에 의해서 점자형식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9년 Wells Fargo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서와 같은 금융관련 정보를 최초로 점자를 포함한 큰활자조판 및 오디오 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은행에서도 점자형식으로 작성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American Express카드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점자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 3대 신용평가기관이 점자형식의 신용평가보고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정보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V. 맷으며

점자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스스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점자법은 점자교육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자교사의 점자능력 검증, 점자형식 교과서 및 교육자료의 제공, 점자자료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점자사용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그러나 처음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점자교육을 확대하려고 하였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였으며, 1987년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점자법의 입법이 시도되었을 때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 점자법이 입법되었지만, 점자법의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관련 정보의 점자형식 제공은 입법보다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점자법의 입법을 통하여 점자형식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려고 할 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분야별 차이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 대 홍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Braille Into the Next Millennium - [www.loc.gov/nls](http://www.loc.gov/nls)
- National Organization of Parents of Blind Children, The Bridge to Braille: Reading and School Success for the Young Blind Child – [www.nfb.org/nopbc.htm](http://www.nfb.org/nopbc.htm)
-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The World Under My Fingers: Personal Reflections on Braille, Second Edition – [www.nfb.org](http://www.nfb.org)
- Fredric K. Schroeder, “Braille Bills: What are they and what do they mean?”, 1995 - [www.blind.net/alternative-techniques/braille/braille-bills-what-are-they-and-what-do-they-mean.html](http://www.blind.net/alternative-techniques/braille/braille-bills-what-are-they-and-what-do-they-mean.html)
- Olegario D. Cantos VII, “Of Judges, Attorneys, Juries, And The Blind” - [www.blind.net/civil-rights/of-judges-attorneys-juries-and-the-blind.html](http://www.blind.net/civil-rights/of-judges-attorneys-juries-and-the-blind.html)
-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 [www.afb.org](http://www.afb.org)
-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APH) - [www.aph.org](http://www.aph.org)
- Braille Too (Grant Wood AEA, Iowa) - [www.aea10.k12.ia.us/divlearn/brailletoo.html](http://www.aea10.k12.ia.us/divlearn/brailletoo.html)
- Exceptional Teaching Aids, Inc. (Mangold Exclusives) - [www.store.exceptionalteaching.net/maex.html](http://www.store.exceptionalteaching.net/maex.html)
- Massachusetts Commission for the Blind Related Laws & Regulations - [www.mass.gov/eohhs/gov/laws-reg/mcb/mass-braille-bill.html](http://www.mass.gov/eohhs/gov/laws-reg/mcb/mass-braille-bill.html)
- Texas School for the Blind Publications - [www.tsbvi.edu](http://www.tsbvi.edu) (go to Curriculum Publications)